

연구보고 2010-10

#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손희두

#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연구자 : 손희두(연구위원)  
Son, Hee-Doo

2010. 10. 31.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북한법제는 1990년대의 경제개방 노력과 김정일체제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그 변화의 주된 흐름은 사회주의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요소의 도입
  - 그러한 추세 중의 하나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협약, 국제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조문 내용에도 국제적 기준을 반영
- 특히 이러한 추세는 재정금융부문, 지적재산권부문, 대외경제협력부문, 환경부문, 보건의료부문과 같이 대외적 접촉과 교류가 많은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변화실태 및 법제도적 변화를 연구
  - 향후 북한 경제개방의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 □ 연구의 목적

-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변화현황과 실태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진전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 ○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 사회주의이념은 국가 내부의 계급대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법은 그 이념상 본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
- 먼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리인데,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동질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본주의국가들과는 투쟁 또는 긴장관계를 나타냄
- 다른 하나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위의 원칙인데, 국제법은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국내법의 일부로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원칙 견지

####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 북한 법령에서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국제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 북한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문체와 땀 수 없는 연관 속에 있지만,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국제화

- 북한법령이 국제화를 수용해온 요인은 해외동포의 보호, 대외 교류의 물질 기반 구축, 국제기구의 조력, 경제개방, 대외적 권리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등 매우 다양

## □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 ○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
- 국제화수용기(1984~현재): 북한이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노선에 자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
  - \* 국제화착수기(1984~1991):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
  - \* 국제화발전기(1992~2001):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
  - \* 국제화전환기(2002~현재):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

### ○ 법령 국제화의 형태

-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관련된 국제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 규범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법령 조문으로 규정

-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규범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국내법에 다시 규정함으로써 수용
-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법령 조문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는 규정을 둠

## □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 ○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하면 북한법제의 변화나 국제화도 상당히 제한적
-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제화와 개방적 태도를 보여 왔지만 전반적인 법령들의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

### ○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 북한법령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령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측면의 개선과 법제인력의 교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개성공업지구를 남북한 법제의 완충지대이자 통합의 시험대로 활용
- 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과 인도적 지원의 제도화 필요

###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 필요

-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ODA사업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긴급

### Ⅲ. 기대효과

- 북한 법령이 사회주의적 법체계로부터 시장경제적 법체계로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북한법제 변화의 실태와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
- 북한 법령 국제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제 발전을 위한 과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북한 법령의 국제화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향, 그리고 북한 법령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

▶ 주제어 : 북한법령 국제화 사회주의법 경제특구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통일 법제교류지원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Study

- North Korean laws have experienced big change since the establishment of Kim Jung-Il regime and the opening of its economy in the 1990s.
  - The main stream of the change is an introduction of capitalist market-economy factors getting out of the socialist law system.
  - One of such trends is that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r global standards wa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whole laws and global standards wer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he provisions.
- Especially, such a trend is notable in the departments performing more international contacts and exchange like the fina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environment, the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 etc.
-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analyzes the overall social change and the legal change.
  -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not only in prospecting future aspects of the open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for the eas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 Purpose of the Study

-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real aspect of the overall legal change in North Korea.
  - Through this, the study aims contributing in develop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systemically exploring the long-term methods preparing the Korean unification.

## **II. Main Contents**

### North Korean Legal System and Internationalization

- The Ideology of Socialist Law and Internationalization
  - Because socialism originated from the understanding of class struggles in an internal country, socialist law naturally shows two attitudes against the international norms and order as follows:
    - One is the principle of socialist internationalism. Socialist law tends to make much of homogeneity and solidarity between socialist countries, but shows conflict or tension over capitalist countries.
    - Another is the principle of the superiority of domestic law over international law. Socialist law adheres to the principle that international law is enacted as a part of domestic law only after approval by the country.

○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in North Korean Laws and Its Reception

- A certain extent of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required in the developing phase of the society was performed, and accelerated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economy since 1990s.
- Though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ased on socialism was deeply connected to the achieving of socialist democracy and proletarian dictatorship, but was gradually interna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 The factors that North Korean laws have received the internationalization are very various, for instance, protection of nationals overseas, establishment of material basi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pening of the economy, protection of external rights,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etc.

□ Main Content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 Periodic Categorie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Period(1948~1983)
- Reception of Internationalization Period(1984~present)
  - \* Beginning of Internationalization Period(1984~1991)
  - \* Developing of Internationalization Period(1992~2001)
  - \* Trans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Period(2002~present)

- Forms of the Legal Internationalization
  - General Reception of International Norms
  - Domestic Reception of International Norms
  - Advis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Its Limitations and Issues
    - Regarding the ideological background named ‘Juche’ idea and socialism, and social conditions continually emphasizing the socialist legal lif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may be somewhat restrained.
    - Though North Korean laws have show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open attitude in laws related to various departments, the normativeness of the whole laws is still questioned.
  - Inter-Korean Legal Cooperation
    - To support continual perform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Two sided approaches are required, the improvement of typical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laws and the experts’ exchange in a legal field.
    -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y be developed as a buffer zone between both Korean legal systems and a test-bed of legal integration

- International Support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 In terms of the exchange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through ODA projects may be required.

### **III. Expected Effects**

- Reviewing the stream that the North Korean law system changes from the socialist law to the market-economy law, shows the real aspects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its change.
- Analyz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derives some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law system and inter-Korean cooperation methods, and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advance of inter-Korean relationship.
-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suggests some legal issue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unification basis and international support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laws.

➤ **Key Words :** North Korean Law, Internationalization, Socialist Law, Special Economic Zon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Unification, Legal Exchange and Suppor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9
제 1 장 서 론 .....	17
제 2 장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	21
제 1 절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	21
제 2 절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	24
1. 북한에서 국제화의 개념과 태도 .....	24
2. 북한의 헌법과 국제화 .....	29
3. 북한 법령 국제화의 요인 .....	35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	47
제 1 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	47
1.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	48
2. 국제화수용기(1984~) .....	51
제 2 절 법령 국제화의 형태 .....	57
1.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	57
2.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	64
3.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	65
제 3 절 각 법령부문별 국제화 분석 .....	70

1. 대외통상 관련 법령 .....	70
2. 보건의료 관련 법령 .....	74
3. 경제개방 관련 법령 .....	76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	87
5. 과학기술 관련 법령 .....	88
제 4 절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과 전망 .....	92
1.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 .....	92
2. 법령 연구의 국제화 추세와 전망 .....	110
제 4 장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	113
제 1 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	113
1.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 .....	113
2. 법령 국제화의 규범적 과제 .....	116
제 2 절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	120
1. 법령 국제화와 북한법제 발전방안 .....	120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124
제 3 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	126
1. 국제기구와의 공조 .....	126
2. ODA를 통한 법제교류지원 .....	128
참 고 문 헌 .....	131

## 제 1 장 서 론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이것은 2009년 12월 17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준공식 때 김정일이 전달한 친필서한의 내용인데,<sup>1)</sup> 김정일 지도하에 현재 북한이 지향하는 목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일이 하달한 정신이며,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이제 조선노동당의 구호가 되어 있다.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본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제힘으로 일떠서면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세계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와 관련하여 “당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이 구호는 현재 북한이 세계를 대하는 자세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이념과 정신에 있어서는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주체적 발전관을 피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동참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사회 발전의 도정과 그 근원적 한계는 북한법제의 국제화 추세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북한법제는 1990년대의 경제개방 노력과 김정일체제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의 주된 흐름은 사회주의적 법체계에서

1) □□로동신문□□ 2010.9.1, 공동논설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참조.

2) 위의 공동논설 참조.

벗어나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세 중의 하나로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협약, 국제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조문 내용에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회계법, 보험법, 자금세척방지법, 상업은행법 등 재정금융부문,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원산지명법 등 지적재산권부문, 무역법, 해운법, 외국인투자법, 민용항공법 등 대외경제협력부문,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바다오염방지법 등 환경부문, 인민보건법, 의료법, 공중위생법, 마약관리법 등 보건의료부문과 같이 대외적 접촉과 교류가 많은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헌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할 때 북한법령이 국제화를 수용해온 요인들은 그 법령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해외동포의 보호, 대외교류의 물적 기반 구축, 국제기구의 조력, 경제개방, 대외적 권리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sup>3)</sup>

북한 법령상의 국제화 추세와 국제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변화실태 및 법제도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북한 사회발전과 경제개방의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북한은 금년 9월 44년만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3대 세습에 의한 후계체제 구축을 공식화하고 있다.

---

3) 이외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법제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도 2004년 북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등을 감안할 때 법령 국제화의 한 추세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주제의 정치이념적 성격과 국제화에 관련한 다른 법령과의 이질성, 그리고 자료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필요한 범위 이내로 논의를 제한하고, 다른 기회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관련한 연구로는 김수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관”,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11호, 2008 및 한인섭, “북한의 형사법과 인권현실”, 같은 책 참조.



따라서 향후에는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경제개방 등 북한의 변화를 몰고 온 김정일 위원장의 세습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3대 세습에 의한 권력 이양이 경제 개방, 나아가 법령의 국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매우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변화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진전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법이념과 법체계상의 국제화에 관한 태도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재정금융, 지적재산권, 대외경제협력, 환경, 보건의료 등 각 부문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국제화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과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법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반적인 북한법제의 발전방안, 법제도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등을 검토한다.

북한 법령이 사회주의적, 폐쇄적 법체계로부터 점차 시장경제적, 개방적 요소를 가미한 법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는 흐름을 국제화 추세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북한법제 변화의 실태와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하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법령 국제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북한법제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법제의 개선방안, 그리고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한 개선과제 등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장 서론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향, 그리고 북한 법령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장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 제 1 절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사회주의이념은 국가 내부의 계급대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이념이 한 국가를 넘어선 국제질서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이론적 대립이 수반되었으며, 그 제도적 귀결인 사회주의법도 같은 길을 걸었다. 북한도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함께 태어난 새 형의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법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 하는데 복무하는 인민적인 법으로서 착취자국가의 법들과는 비할 바 없이 가장 우월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그 결과 정립된 사회주의법은 그 이념상 본질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먼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주의의 국제적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사회주의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한 인민들간의 분열과 적대는 사회주의법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이라는 보편적 대의에 대한 인민들의 통일을 증진시킨다.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이 원리는 모든 인종 및 민족의 평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독립국의 형성까지 포함하는 헌법과 여타 규범들에 반영되어 있다.<sup>5)</sup>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는 전통적 국제체제에서 보아 새로운 이질적 형태의 국제관계이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세계노동운동의 원칙인 프로레

4) 장춘식, “사회주의적준법의식의 형성발전단계”, □□정치법률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36면 참조.

5) V. 치르킨, Yu. 유딘, O. 지드코프 지음, 송주명 옮김, □□맑스주의국가와 법 이론□□, 도서출판 새날, 1990, 298~299면 참조.

타리아국제주의가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로부터 발전한 결과 성립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가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동질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본주의국가들과는 투쟁 또는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위의 원칙이다. 사회주의법이론에서 국제법의 존재는 많은 이념적 논란을 일으킨 주제이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고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된 후 소련 국제법학계가 당면한 지상과제는 국제법을 마르크스주의이론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제국주의적 적대세력에 포위된 소련이 살아남는 데 국제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등의 저작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관계가 있으며, 항상 국가의 법이다. 국가 없이는 법은 없으며, 또한 법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sup>7)</sup> 국가는 그 본질상 계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법의 본질적 기능은 한 계급의 타 계급에 의한 착취, 즉 국민의 타 집단에 대한 지배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제법이 서로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규범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마르크스의 법의 정의는 이 사회질서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공동체 내에 있어서는 국제법의 주체인 제 국가에 의하여 형성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은 마르크스의 견해에 의하면, 법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보증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국제법의 성격과 법원에 관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이후로 사회주의법이론가들의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었다.<sup>8)</sup>

6) 법무부, □□북한법연구(V) - 국제조약 - □□, 1987, 6면.

7) 한스 켈젠 저, 장경학 역, □□공산주의 법이론□□, 명지사, 1983, 221면 참조.

8) 그러한 확실 대립의 자세한 내용은 한스 켈젠 저, 앞의 책, 221~276면 참조.

초기 소련 국제법학자들은 소련과 자본주의국가간에는 법적 공동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해지고, 2차대전 후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국가가 출현하면서 소련 외교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 국제법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단일한 국제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9)</sup>

하지만 시대상황과 학자에 따라 그 이론적 설명은 조금씩 다를 지라도,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자본주의적 포위가 존재하는 한, 주권의 어떠한 제한도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은 국가에 의하여 국제법으로서 승인된 경우에만, 또한 그 때문에 국내법의 일부로서만 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원칙은 견지되었다. 즉, 국제법의 효력의 근거가 국내법질서의 근본규범이며, 국제법은 국내법질서의 일부라고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에서 국제협약은 국내 법원이 될 수 없고, 국제법규가 국내법규로 되기 위해서는 전환과정이 필요하며, 관할 국가기관이 상응하는 규범적 법령을 제정해야만 한다.<sup>10)</sup>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북한 헌법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개별 법령에서 북한이 승인한 국제협약 등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에 대한 태도를 관찰할 때 나타나는 사회주의법의 국제사회에 대한 경계심은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달라

9) 법무부, □□북한법연구(V) -국제조약-□□, 1987, 11~17면 참조.

10) V. 치르킨, Yu. 유딘, O. 지드코프 지음, 앞의 책, 305면.

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이 점차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준법의식령역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것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sup>

## 제 2 절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 1. 북한에서 국제화의 개념과 태도

#### (1) 국제화의 개념

북한에서 ‘국제화’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여러 나라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용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다.<sup>12)</sup> 이는 문자그대로의 가치중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반면, 북한에서 ‘국제주의’는 “낡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국제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도우며 굳게 단결하는 국제적 연대성의 원칙 또는 그러한 사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국제주의자’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보아 ‘국제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줄인 말이며, ‘국제화’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이념이 반영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한편, 북한은 ‘세계화’를 “세계가 사상과 제도, 정치와 경제, 문화와 법률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로 되게 합친 것 또는 그런 과정이나 현상을

11) 장춘식, “사회주의적준법의식의 형성발전단계”, 앞의 논문, 38면.

12)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55면.

13) □□조선말사전□□, 155면.

이르는 말. 1990년대 초 랭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에서 나와 류포된 반동적인 사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한 저작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명분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나라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원조』와 『협조』를 주고 이를 미끼로 『민주주의』를 강요하거나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이 새 사회건설에 자본주의적 방식이 도입되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퇴색변질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세계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매 개인의 조국은 전세계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무국적자』, 『세계공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르췌아적 침략사상과 이론. 민족적 자주권을 부인하고 유린하며 민족허무주의를 설교하고 민족문화와 그 전통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도록 함으로써 미제의 세계침략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복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세계주의란 매개 사람들의 조국은 전세계이며 모든 사람은 무국적자 세계공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르췌아침략사상이다. 세계주의는 오늘 제국주의적 해외팽창을 설교하며, 특히 미제의 세계제패를 합리화하는 가장 반동적인 부르췌아사상조류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파시즘이 추구하는 <세계화>책동은 군사력에 의한 침략과 전쟁을 중시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각 방면에서의 지배와 예속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중략)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개혁>, <개방>으로 집요하게

14) 김재호, □□김정일시대를 빛내일 리상국건설전략: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52면 참조. 이 책은 북한에서 출판되었으나, 속표지에는 “이 책은 남조선에서 출판한 책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도서출판 지성)을 입수하여 재판한 것이다”라고 표기하여 남한에서 출판한 책을 재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북한에서 출판된 이상 내용상 북한측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조선말사전□□, 895면.

유도하면서 이 나라들에 정치분야에서의 <의회제>와 <다당제>, <분립제>를 악랄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세계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에 있어서 국제화는 이념성을 내포한 세계화보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용어의 정의상 ‘국제화’는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세계화’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반동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 (2) 국제화에 대한 태도

북한에서도 국제화는 개념정의상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경우에 따라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대하여 사회주의법이 가지는 일반적 태도를 그대로 가진다. 즉,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성격상 자본주의국가들로 포위된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도 일찍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세계근로인민들과 피압박인민들의 강력한 무기이다. 더우기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새 세계전쟁의 준비에 광분하고있는 오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관한 레닌의 학설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불패의 사상적 뉴대로, 단결과 공동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sup>17)</sup>

16) 리광철, “미국과시즘은 미국지배하의 일극세계수립을 목적하는 세계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55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144~146면 참조.

17) □□김일성 저작집 7 (1952.1 - 1953.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70면, “프로



또한 비동맹국가들의 단결에 의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축을 강조하면서, “오늘 뽀러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기간 뽀러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전략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뽀러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미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해당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여러가지 국제기구들도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로 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에서는 이렇다 할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저들의 독점지위를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할 데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18)</sup>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영·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질서와 경제권에 대한 편입 또는 수용을 의미하는 세계화는 결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제였으며, 때로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의 국제화까지도 세계화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김정일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 책동은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 민주주의세계로 만들어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1952년 4월 25일) 참조.

18) □□김일성 저작집 40 (1986.5 - 1987.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48면, “뽀러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련합회의에서 한 결론(1986년 6월 20일) 참조.

지배하고 예측시키자는 것입니다”<sup>19)</sup>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학자도 “경제의 『세계화』는 1990년대에 미국이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제창자들은 경제의 『세계화』란 민족국가들의 주권과 국경과 같은 제한을 없애고 세계적 범위에서 생산력을 확대하며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를 단일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변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과와 위기만을 가져다줄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무모한 책동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혼란을 격화시킨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0)</sup>

또한 금융의 국제화에 대해서도 “자본의 국제화는 자본의 형성과 국가간에 거래를 조직해주는 금융의 『국제화』를 필연적으로 산생시키게 되며 그의 『국제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된다. 금융이 『국제화』된다는 것은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금융활동이 서로 떼여놓을 수 없게 긴밀하게 얽혀지고 국제적으로 연결되며 금융거래가 국경이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의 『국제화』는 해당나라 금융기관의 『국제화』, 금융시장의 『국제화』, 통화의 『국제화』 등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제금융기구들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금융의 『국제화』 과정이 추진된다...(중략) 이러한 금융의 『국제화』는 세계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이처럼 금융의 『국제화』는 위기 속에 허덕이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하여 생산의 감퇴, 실업자대군의 형성, 인플레이의 격화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1)</sup>

19) □□김정일선집□□ 15권, 261면 참조.

20) 박영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경제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46면.

21) 강경희, “금융의 『국제화』와 그 파국적 후과”, □□경제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

이처럼 국제환경에 덜 개방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이념적 특성상 세계화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북한법의 발전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국제화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다.

## 2. 북한의 헌법과 국제화

북한의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헌법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문제와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있다.<sup>22)</sup> 이에 따라 북한 헌법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벗어난 국제화에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지만,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와 협력, 대외경제활동의 증가 및 점진적인 개방정책의 추구, 외국투자의 유인 필요성 등 대외환경의 변화를 사회주의이념과 자립경제노선의 고수만으로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헌법에서도 서서히 국제화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었다. 현행 『북한 헌법』은 2009.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것인데, 이 헌법에서 국제화와 관련된 조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사전종합출판사, 2008), 48~49면 참조.

22)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9면 참조.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  
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  
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  
영을 장려한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적수준에 올려세운다.

### (1)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

먼저, 제15조의 해외 조선동포의 권익 옹호에 관한 규정은 1972년  
헌법 제15조로 신설되었다. 북한은 해외에 있는 동포의 권익을 옹호  
하기 위한 투쟁이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타민족을  
탄압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반제투  
쟁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sup>23)</sup>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의 옹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른바 제국주의로부터 폄박받는 동포들, 즉,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본 친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 이 조항을 반영하기 전인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적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도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sup>24)</sup>

## (2) 외국인 권익 보장

제16조의 북한 내에서의 외국인 권익 보장에 관한 규정은 1992년 헌법 제16조로 신설된 것이다. 이 조문은 외국 법인 및 개인의 합영,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등을 규정한 제37조와 함께 북한의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북한이 종래 경제의 기본노선으로 삼아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고,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노선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1970년대부터 그 한계를 인식하고 조금씩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제정된 합영법을 시작으로, 1992년의 합작법, 1993년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등 수많은 경제개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결국 이 조문은 1992년 당시 이미 시행중이던 합영법 등 경제개방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대외경제 관계에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었다.<sup>25)</sup>

23)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2면.

24)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1997 참조.

25)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2~153면.

### (3)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활동원칙

북한 헌법 제17조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제1항) 및 대외활동원칙(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문을 처음 채택한 것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인데, 제16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sup>26)</sup>

1992년 헌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 부분을 삭제하여 제2항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신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이념 및 활동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맑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당초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강조는 주로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금은 서방국가와의 외교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sup>27)</sup>

### (4) 대외무역

제36조는 대외무역활동의 주체(제1항)와 기본원칙(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34조제1항과 1992년 헌법 제36조제1항은

26) 북한의 헌법이 주체의 헌법이론으로 무장한 사회주의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꼽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앞의 책, 27면 참조.

27)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155면.

대외무역을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헌법에서는 이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규정은 그대로 현행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독점의 외형적인 포기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첫째는 북한경제가 계획경제라는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34조는 인민경제는 계획경제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제 11조), 이를 정확히 실현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제 27조). 다음으로 북한에서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사회협동단체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보호와 지도 하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내각(정무원)의 대외무역기관 외에 노동당, 군부, 각 지방행정기관 등이 무역회사를 앞다투어 설립하여 외화획득에 나서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업무를 각 단위에 허용한 것을 무역의 자유화·분권화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무역회사별로 수출입무역을 전문화하고, 무역가격이 단일화되어 있는 무역체계로서, 그것은 본질상 국가의 단일무역체계라는 것이다.<sup>28)</sup> 그러므로 헌법 조항의 개정은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단위들이 다양화, 다각화된 현실을 뒤늦게나마 헌법에 반영한 결과일 뿐 무역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조항의 개정

28)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31면 참조.

으로 대외무역 창구의 다원화를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외무역형태를 창출해 나가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29)</sup>

북한 헌법 제36조제2항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대외무역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의 내용 중 하나인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자주성원칙을 대외무역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의 의미는 미국 등 서방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감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성 부상 김용문은 “공화국에서는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도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왔으며, 사회주의시장의 소멸 이후는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여 일관된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서측제국의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제재는 날로 노골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부 서측제국이 정치적 야망을 하루빨리 버리고, 상호존중의 입장에 서서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30)</sup>

### (5) 대외경제개방

제37조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 등 대외경제개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처음 헌법에 포함되었던 1992년 헌법의 제37조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98년 헌법에서는 나아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29) 이 조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즐고,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7~9면 참조.

30)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참조.



이 조문은 1984년의 『합영법』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해 온 대외경제 개방 관련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6) 과학기술의 발전

제50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촉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본조의 내용과 제51조의 내용을 한데 묶어 제44조로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2년 헌법에서는 종전 헌법 규정 중 앞 부분을 떼어 제50조에 규정하면서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개척’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조문은 북한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은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개척을 강조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연구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인민경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sup>31)</sup>

## 3. 북한 법령 국제화의 요인

헌법의 변화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법령이 국제화를 수용해온 요인들은 그 법령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해외동포의 보호, 대외교류의 물적 기반 구축,

31)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23~126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85년 8월 3일) 참조.

국제기구의 조력, 경제개방, 대외적 권리 보호,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1) 해외동포의 보호

북한이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내세운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조선동포의 권익 옹호에 관한 규정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15조로 신설되면서부터이며, 현행 헌법 제15조에도 마찬가지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형식상으로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의 옹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받는 동포들, 즉, 조총련을 비롯한 재일본 친북한 동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헌법에 이 조항을 반영하기 이전에도 1963년 10월 9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적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도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당시 국적법 제1조제1호는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최초의 북한국적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경과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북한은 국적법상의 조항에 의하여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로서 공화국국적법이 공포된 1963년 10월 9일까지 조선국적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이란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sup>33)</sup>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란 ‘조선국적을 합법적으로

32) 김영철·서원섭, 허섭감수, □□현대국제법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77면.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 238면에서 재인용.

33) 일본은 북한 국적법이 재일한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제하고, ‘조선민주

변경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 국적법의 공포일인 1963년 10월 9일까지는 국적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적의 포기' 또는 '합법적인 변경'이란 있을 수 없었다. 또한 국적법 시행 이후에도 북한국적으로부터의 제적은 청원에 의해 북한당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sup>34)</sup>, 제적이외에 북한국적의 포기 또는 상실은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북한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국적의 포기' 또는 '합법적인 변경'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 국적법은 신·구 국적법 모두 국적단일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외국국적 취득자도 당연히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리상 남한국적자와 해외교포들도 북한국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적법」의 채택과 헌법상 해외동포 보호조항을 뚫으로써 해외동포, 특히 재일 친북한동포들에 대한 북한의 관할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적법 제16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2) 대외교류의 물적 기반 구축

한 국가가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견지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 해운 및 수로 등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기준의

---

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이란 북한의 해석대로 '일제식민지통치 이전 조선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제가 1922년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한 「조선훈적령」에 의하여 조선훈적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란 일본 또는 외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 238~239면 참조.

34) 신 국적법 제15조, 구 국적법 제10조.

준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북한도 원활한 대외교류를 위해서 1980년 대 이후 이 분야 법령들의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북한은 항공에 관하여 『민용항공법』을 2000. 3. 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19호로 채택하였고, 2005. 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6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은 1977년 9월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했다. 『민용항공법』 제8조(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는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국제협약의 효력)에서는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제8장 항공보안을 신설, 민간 항공보안 사업의 기본요구 등 4개의 조문을 뒀다. 북한이 이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후 각국이 항공관련 입법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설 조항들은 동경협약 등 북한이 가입한 항공관계범죄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해운과 관련하여 『해운법』, 『해사감독법』, 『해상침수송법』과 같은 해상물류관련법, 『항만법』, 『갑문법』, 『배길표식법』, 『수로법』, 『자유무역항규정』과 같은 해양시설관리법 등을 두고 있다.

그 중 해운에 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해운법』은 1980. 8.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하였고, 1998. 11.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 2004. 9.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되었다. 『해운법』은 제9조(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에서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규정과 제10조(해운관계 국제협약의 효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항행질서와 해

상수송, 해상무역분야의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1986년 4월 가입하였다.

북한은 『수로법』을 2004. 3. 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4호로 채택하였다. 『수로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통상의 기반 구축을 위한 분야는 국가간의 소통 원활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법령에서도 대체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3) 국제기구의 조력

다음으로 북한이 국제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를 들 수 있다. 즉, 보건의료 및 적십자활동 등에 관한 법령들이 대표적이다.

북한 『의약품관리법』은 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로 채택되어, 1998년 한 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의약품 관리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원칙을 두고 있다. 즉, 국가는 의약품 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분야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파로 하여 인민들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보건분야에서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협조를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질병을 없애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며 의약품생산을 늘이는데서 협조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합병병원 같은 것을 널리 조직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sup>35)</sup>라고 의약품생산에서의 남남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7년 1월 10일 『적십자회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3호로 채택하였다. 『적십자회법』은 제3조(적십자회의 활동원칙)에서 “적십자회는 국가의 해당 법규와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공화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보충의정서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9조(국제적인 지원의 요청)에서 “적십자회는 큰 규모의 재난시에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십자 협조사업은 적십자회를 통하여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4) 경제개방

북한에서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령들은 국제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국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대외 경제개방의 특성상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서는 외국투자의 유치, 무역 및 금융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령은 경제특구법을 비롯하여 외국투자, 무역, 회계, 금융 등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내용을 다 기술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경제개방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법령으로서는 『무역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화관리법』, 『회계법』 등을 들 수 있다.

□□무역법』은 1997. 12.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되고 1999년과 2004년에 걸쳐 수정보충되었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35)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 □□김일성 저작집 40 (1986.5 - 1987.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남남협조에 관한 빨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한 축하연설(1987년 6월 9일) 참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약과 협정 및 관례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역법 제7조(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원칙)에서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9조(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에서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계약법』은 1995. 2.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로 채택되고,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이 법 제7조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화관리를 위하여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외화관리법』을 채택하고,<sup>37)</sup> 이어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외화관리법은 각 개별법제에 산재해 있는<sup>38)</sup> 외화관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일적

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이트(<http://www.kotra.co.kr/main/info/nk/letter>).

37) 이는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정보충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되었다.

38) 북한에서 외환에 관한 규정은 1985년 합영법 시행세칙이 최초였으며, 여기서의 외화관리원칙은 『외화관리법』에 반영되었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 의해

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외국기관·외국인·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및 북한 주민에까지 적용되는 외화관리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다.<sup>39)</sup>

또한 북한은 국가 재정 확보와 대외개방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회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 개정하였다. 북한은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 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하였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후 최고인민회의가 다시 법령으로 승인한 것은 회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부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sup>40)</sup>

이외에 외국인투자, 경제특구 등에 대한 회계관련 법령들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회계법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고,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sup>41)</sup> 앞으로 점차적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대외적 권리 보호

북한이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한 것은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즉,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분야에서 보다 국제적 기준이 도입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외국인투자법제의 골격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외화관리규정은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 내용은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업청산 후 남은 자금의 국외송금보장과 같은 원칙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예컨대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등).

39)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 235~236면.

40) 그 의미에 관해서는 즐고,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7면 참조.

41) 회계법 제6조 및 제8조 참조.



북한은 <표1>에서 보다시피 1998년 이후 상표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원산지명법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제 정비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표1> 지적재산권 관련법 제정 내용

제정 시기	법 명
1998년 1월	상표법
1998년 5월	발명법
1998년 6월	공업도안법
2001년 4월	저작권법
2003년 6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2003년 8월	원산지명법
2004년 4월	형법 개정(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2004년 5월	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 설립
2004년 6월	저작권 사무국 설치

#### (6) 과학기술 발전

북한이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의 법령에서도 국제협력과 국제기준의 도입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개방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선진 과학기술 보유 국가들과의 협력과 과학기술 부문의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지원·유치 프로그램을 획득하고 국제규격 및 표준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42)</sup> 또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평양 국제상품전’과 같이 북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과학기술행사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라는 수식어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국제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화의 참여의지는 북한의 고위관료들의 연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2004. 3. 25)에서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 것은 올해 내각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중략)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사업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연설했다.<sup>44)</sup> 또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제1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합영·합작·투자 도입을 통해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국제경제기구들을 통한 개발협조도 장려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45)</sup>

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활동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우선 시기적으로 북핵문제 등

---

42) 북한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과 국제규격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7·1 조치 이후 생산성 제고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표준화·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적 품질제고를 경제사업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신년공동사설, 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제규격의 품질제고를 통한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 및 대외신용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2002. 2), 독일(2002. 4), 중국(2003. 9) 등과 품질·규격화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가입하는 등 선진기술 도입과 협력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임을출,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현황과 과제”, 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2004년 가을호, 2004, 34면 참조.

43)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nktech.net>), 『북한의 과학기술 대외협력 동향』(2004. 11. 1) 참조.

44) 『조선중앙통신』, 2004. 3. 26.

45) 『조선중앙통신』, 2004. 6. 23.

으로 대외 경제지원이 부진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형식면에서는 북한대표단이 외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IT산업과 첨단과학기술부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활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적대국가인 미국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등 보다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46)</sup>

이에 따라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도 국제협력과 관련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은 199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과학기술법』을 채택(2005. 12.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하였는데, 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 배합원칙, 선진기술 도입대책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세계적인 과학자·기술자 양성, 정보자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등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비하여 대단히 많은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원자력법』, 『기상법』 등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있는 대부분의 법령이 포함된다.

---

46)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00호, 2004. 06. 25.

##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 제 1 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북한 법령의 국제화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북한 법령의 국제화는,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또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북한의 정책방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법령의 국제화는 이러한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와 국제화수용기의 두 시기로 대별할 수 있고, 국제화수용기는 다시 국제화 진전 양상에 따라 세 시기로 세분될 수 있다.

- I)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
  - II) 국제화수용기(1984~현재): 북한이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노선에 자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
    - i) 국제화착수기(1984~1991):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
    - ii) 국제화발전기(1992~2001):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
    - iii) 국제화전환기(2002~현재):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
- 다만, 국제화전환기에 있어서는 2009. 10. 30 단행된 화폐개혁, 2009.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과 선군정치 강화, 2010. 9. 28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의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

공식화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의해 향후 커다란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시기별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1948~1983)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경제개방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로 이른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제2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고 규정한 이외에는 특별히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제창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1956년 04월 29일)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조선 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 인민과 소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일체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15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재외동포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

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규정하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북한 법령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머물러 있었고, 결코 사회주의이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일반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미·소간의 냉전이라는 틀에 의해 형성된 국제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비단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권의 단결과 상호원조를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에는 헌법상 해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1963년 『국적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도 북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이외에는 법령상 국제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인식과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이 시기 말기에 이르러 북한은 『인민보건법』(1980. 4.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을 채택하면서,<sup>47)</sup> 제7조에서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

47) 북한은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결코 돈이 많아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습니다”라고 인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 저작집 35 (1980.1 - 1980.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1980년 4월 4일) 참조.

으로 치료하여 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는 규정을 두어 외국 망명자들에 대한 보건의료보호를 선언하고, 또한 제8조에서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보건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보건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이렇게 『인민보건법』이 일찍 정비된 것은 생산수단의 국·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구성원의 의식주문제, 특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료품과 의료보건문제의 사회적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도 1960년대에 이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관하여 주장하면서 무상치료와 의식주문제의 해결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sup>49)</sup> 헌법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1972년 『사회주의헌법』(1972. 12. 27)에서도 전반적 무상치료제(제48조)를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결코 돈이 많아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습니다”라고 인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였다.<sup>50)</sup>

또한 해양통상을 위하여 『해운법』(1980. 8.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과 『항만법』(1986. 9.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48) 한편 이 조항은 1999년 개정에서 “국가는 보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1992년 헌법 개정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삭제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법문으로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생각된다.

49)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 □□김일성 저작집 14 (1960.1 - 1960.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0년 8월 25일) 참조.

50)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찰하자”, □□김일성 저작집 35 (1980.1 - 1980.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1980년 4월 4일) 참조.

결정 제 21호로 채택)을 제정하였는데,<sup>51)</sup> 『해운법』 제9조에서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국제협력규정과, 제1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국제협약 효력 인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만법』 제7조는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국제협력규정과,<sup>52)</sup>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국제협약 효력 인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운법』과 『항만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비교적 빨리 제정되고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북한이 해운을 통한 국제통상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사정과 더불어, 대체로 이 법의 특성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 2. 국제화수용기(1984 ~ )

국제화수용기는 북한이 중국에서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노선에 자극받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경제개방에 착수하면서 법령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국제화수용기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한 정책 변화와 법령 국제화

51) 『항만법』은 시기 구분상 국제화수용기(1984년 이후) 초기에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해운법』의 제정과 비슷한 취지와 목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루기로 한다.

52) 이 조항은 앞의 『인민보건법』 제8조의 사례와는 달리 1999년 3월 11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법령 전체적인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다.



양상에 따라 다시 국제화착수기, 국제화발전기, 국제화전환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 (1) 국제화착수기(1984 ~ 1991)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던 시기를 말한다. 북한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방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중국을 모델로 삼아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국제경제질서를 수용하는 법제도의 도입에 첫발을 던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은 경제개방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합영법을 제정한 것 이외에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시행규정들을 법제화하기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영법을 통한 개방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북한은 「환경보호법」(1986. 4. 9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과 「과학기술법」(1988. 12.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을 제정하였는데, 「환경보호법」은 제8조에서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국제교류와 협조에 관한 조항을 규정된 것이 법령 국제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영향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연료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현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

었다.<sup>53)</sup> 이는 『공해방지법』을 모태로 한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이 1977년, 중국의 『환경보호법』이 1979년에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늦은 것으로서 북한의 사회경제발전 정도와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그만큼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식 확산추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법』(1988. 12.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4호)의 제정과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강조도 법령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과학기술은 탈이념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게 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 (2) 국제화발전기(1992~2001)

북한이 1992년 헌법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활발하게 법령의 국제화에 나선 시기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헌법은 제16조의 외국인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7조의 외국 법인 및 개인의 합영, 합작 장려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제17조제3항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sup>54)</sup> 그리고 제44조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선진과

53) 세종연구소(편),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1994, 642면.

54) 물론 이 용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포기하거나 배격했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론 등의 등장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의 용어가 헌법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급투쟁론, 제국주의론 등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이념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혁개방정책을

학기술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 개척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 개정으로 경제개방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경제개방관련 법령들이 줄지어 제정되고 관련 시행세칙들도 제정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자법(1984년 제정되었던 합영법의 시행세칙(1992. 10. 16), 합작법(1992. 10. 5), 외국인투자법(1992. 10. 5), 외국인기업법(1992. 10. 5), 외국인투자은행법(1993. 11. 24) 등과, 대외통상의 활성화를 위한 세관법(1993. 11. 17), 외화관리법(1993. 1. 31), 대외경제계약법(1995. 2. 22), 무역법(1997. 12. 10), 대외경제중재법(1999. 7. 21)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정을 위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도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민용항공법, 수로법, 해사감독법 등 대외통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령,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상표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 국제화와 연관되는 많은 법령들이 이 시기에 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 2004년 처음으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8. 25)에 수록된 112개의 법령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촉발된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시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후계체제를 구축

---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방해가 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용어를 감추어두었을 뿐이다. 김정일도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통일되어 진행되었다. 우리는 주체성과 국제주의를 대치시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본성에 맞게 국제적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 6. 19 참조.

해 오던 김정일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정권 안정화를 위해 개혁 개방정책을 가속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3) 국제화전환기(2002 ~)

이 시기는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경제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법령의 국제화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 경제관리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즉, 물가 및 임금 등 전반적 가격의 인상,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의해 기업소·공장 경제활동에 일부 자율권 허용, 무상을 원칙으로 했던 사회보장체계의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계획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이다.<sup>55)</sup>

이 시기에는 경제특구 지정과 남북한 경제협력도 활성화되어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13), 개성공업지구법(2002. 11. 20) 등이 잇달아 채택되었다. 비록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내외적 요인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남북한 당국의 협의를 통해 다수의 하부규정과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법령 교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로의 접근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5)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병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법경제학적 분석에 관해서는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참조.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개혁을 통해 재정의 확충과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법(2003. 3. 5), 국가예산수입법(2005. 7. 6), 중앙은행법(2004. 9. 29), 상업은행법(2006. 1. 25) 등이 제정되었고, 국제적인 불법자금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세척방지법(2006. 10. 25)도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외에도 행정처벌법과 같은 행정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수로법, 간석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같은 개발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배길표식법, 소방법, 화약류취급법과 같은 안전관련 법령, 제품생산허가법, 담배통제법, 유기산업법 등 산업관련 법령,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기상법, 소프트웨어산업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등과 같은 과학기술관련 법령, 그리고 적십자회법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법령들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는 국제화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명맥을 이어가는 개방정책의 추진과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법제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 법령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있었던 재정법의 수정보충, 그리고 회계법, 국가예산수입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자금세척방지법 등 재정금융분야의 개혁작업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및 금융의 확충과 통제를 도모하는 노력은 뒤이은 2009년의 화폐개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긴 했지만 장마당경제에 길들여진 주민들과의 갈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지 전도를 예상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시 진입했다고도 할 수 있다.

화폐개혁과 더불어, 국제화전환기의 최대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단행된 2009.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강화, 2010. 9. 28 제3차 노동당 대표사회에서의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 공식화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의해 향후 북한의 현실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법령 국제화 추세도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경제개방 등 북한의 변화를 몰고 온 김정일 위원장의 세습과정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화폐개혁 단행 이후 북한 내부의 반발과 3대 세습을 앞둔 북한정권의 국내외적 현황을 살펴보면 개방화의 흐름을 뒤엎고 폐쇄경제로 회귀할 만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 제 2 절 법령 국제화의 형태

북한 법령상 국제화에 관한 내용은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 1.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은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관련된 국제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질서, 국제법 규범, 국제조약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법령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는 <표2>~<표4>와 같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서 나타나는데, 『저작권법』 제5조(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적십자회법』 제3조(적십자회는 국가의 해당 법규와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공화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보충의정서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자금세척방지법」 제4조(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자금세척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제8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용항공법」 제9조(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운법」 제10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등을 들 수 있다.

<표2> 남북한 동시가입 국제기구

번호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이태리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6	로마
6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8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9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10	만국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11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번호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3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4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15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16	FAO/WHO 공동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17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18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19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20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21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2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23	국제법정계량기구(OILM)	1978	1974	파리
24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25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26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27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 (준회원)	제네바
28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29	섬유수출국 개도국 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30	인도양 수산위원회(IOFC)	1967	1974	로마
31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32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	1994	캐나다
33	개도국간特惠무역제도(GSTP)	1989	1989	제네바

출처: 외교통상부



<표3> 유엔전문기구

번호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3	만국 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4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7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8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9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1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1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78	1986	로마
12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출처: 외교통상부

<표4> 정부간 기구

번호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1989	1989	제네바
2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3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4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5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번호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6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7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 (준회원)	제네바
8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9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10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1968	1986 (1996 탈퇴)	로마
11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12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13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14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1967	1974	로마
15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16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	1994	캐나다
17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18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19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1956	폴란드

출처: 외교통상부

&lt;표5&gt; 국제협약의 효력 수용

법령명	조문내용
국적법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법령명	조문내용
대외경제계약법	제 5 조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대외경제중재법	제 7 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 6 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마약관리법	제 5 조 (마약의 수출입원칙) 마약은 필요에 따라 수출, 수입할 수 있다. 국가는 마약의 수출과 수입을 정해진 무역질서와 국제질서에 맞게 하도록 한다.
무역법	제 8 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용항공법	제 9 조 (국제협약의 효력)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길표식법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수로법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전자전이 생물안전법	제 7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제조합데핵산을 가지고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유전자전이식품, 사료,

법령명	조문내용
	<p>가공용유전자전이생물, 유전자 또는 유전자운반체, 프라이머, 프로모터, 비루스, 비로이드 같은 것을 연구 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해당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인체용유전자전이의약품의 수출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제 8 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자금세척방지법	제 4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자금세척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저작권법	제 5 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적십자회법	제 3 조 (적십자회의 활동원칙) 적십자회는 국가의 해당 법규와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공화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보충의정서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법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천법	제 8 조 이 법은 하천을 정리, 보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국경하천의 정리, 보호, 리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명	조문내용
항만법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사감독법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운법	제10조 (해운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2.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은 국제규범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국내법에 다시 규정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즉, 국제규범과 기준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대외관계에 통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참조되어야 할 규범인 경우,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관계에서도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경우, 그 외 국제규범과 기준을 근거로 하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경우 등에 속하는 법령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대외개방과 관련된 분야의 인프라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즉, 대외개방을 조성·관리하는 법령들인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화관리법」, 「회계법」, 그리고 통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민용항공법」, 「해운법」, 「수로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등 지적소유권 관련법과 같이 국내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국내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제기준의 참조가 필요한 『계량법』 같은 법령도 이에 속한다.<sup>56)</sup> 다만, 통상과 관련된 법들은 경우에 따라 북한이 가입 또는 승인한 국제협약 등의 효력 존중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 3.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는 법령 조문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북한의 관련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법령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표6>에서 보는 것처럼 대외적인 정보교류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많은 법령들이 상투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학기술법』 제32조(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연구를 조직할 수 있다), 『원자력법』 제5조(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및 『기상법』 제7조(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등을 들 수 있고, 『저작권법』 제7조(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도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56) 『계량법』은 이와 관련하여 “계량단위는 계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계량단위를 국제단위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는 규정(제3조)과 “중앙계량지도기관과 계량원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를 국제계량원기나 다른 나라 계량원기와 주기적으로 대비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0조)을 두고 있다.

<표6> 대외교류와 협조

법령명	조문내용
가공무역법	제 7 조 국가는 가공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건설법	제 9 조 국가는 건설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계량법	제 9 조 국가는 계량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공업도안법	제 7 조 (공업도안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업도안사업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과학기술법	<p>제 6 조 국가는 세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p> <p>제31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경제지도기관, 무역기관은 특허기술수입, 합영합작기업창설, 설비납입, 과학기술정보수집 같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려는 기술의 발전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데 기초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p> <p>제32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연구를 조직할 수 있다.</p> <p>제34조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p>

법령명	조문내용
	<p>들어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p> <p>제36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수행과정에 이룩된 성과, 새 기술에 의하여 꾸리는 생산기술공정과 기업소건설을 위한 기술과제, 기술수출입제안을, 국가발명심의회위원회는 발명, 특허, 창의고안 같은 것을, 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는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과학기술성과, 선진기술도입, 발명, 창의고안 같은 것을 심의한다.</p> <p>제42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양성생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생선발은 실력본위로 하여야 한다.</p> <p>제53조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의 필요한 과학기술도서와 잡지를 정상적으로 들여오며 과학기술정보자료지와 컴퓨터정보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려 과학기술정보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p>
국토계획법	제 9 조 (국토계획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국토계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규격법	제 7 조 (규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규격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농업법	제11조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대외경제중재법	제 7 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법령명	조문내용
도시경영법	제 8조 국가는 도시경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도시계획법	제 8 조 국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마약관리법	제 6 조 (마약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마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무역법	제 9 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문화유물보호법	제 9 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민용항공법	제 8 조 (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발명법	제 7 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배길표식법	제 7 조 배길표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산림법	제 9 조 (산림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상업은행법	제 8 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상표법	제 7 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수로법	제 7 조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법령명	조문내용
	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산업법	제 7 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소프트웨어산업법	제 7 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원산지명법	제 7 조 국가는 원산지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원자력법	제 5 조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의료법	제10조 국가는 의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의약품관리법	제 8 조 국가는 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인민보건법	제 8 조 국가는 보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장애자보호법	제 8 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저작권법	제 7 조 (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중앙은행법	제 7 조 (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철도법	제11조 국가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체신법	제10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법령명	조문내용
보호법	제 7 조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품질감독법	제 9 조 국가는 품질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하천법	제 7 조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항만법	제 7 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해사감독법	제 7 조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해운법	제 9 조 (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환경보호법	제 8 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7 조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회계법	제 8 조 국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

### 제 3 절 각 법령부문별 국제화 분석

#### 1. 대외통상 관련 법령

북한은 원활한 대외통상의 추진을 위해 1980년대 이후 항공, 해운 및 수로 등 통상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의 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 (1) 항공분야

북한은 항공에 관하여 「민용항공법」을 2000. 3. 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19호로 채택하였고, 2005. 8.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6호로 수정보충하였다.

항공법은 크게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항공법은 국제항공공법, 국제항공형법 및 국제항공사법 분야의 국제조약들을 주요 연원으로 하고 있다. 국제항공조약 가입현황을 보면 국제항공공법 분야의 경우 남북한은 모두 1944년 시카고협약과 국제항공서비스통과협정의 당사국이지만 국제항공운송협정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항공형법 분야의 경우에는 남북한 모두 동경협약과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몬트리올협약 보충의정서의 당사국이지만 가소성 폭약 식별조치협약에는 남한만이 가입하고 있고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항공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남북한 모두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당사국이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는 남한만 가입하고 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추가의정서들과 지상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배상문제를 규율하는 협약에는 남북한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제항공조약 가입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가입한 조약에는 남한도 모두 가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다른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항공범죄 관계 국제조약에 가입 시 유보를 하면서 자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동경협약과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유보를 하면서 이 조항들이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 (2) 해운분야

북한의 「해운법」은 1980. 8.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하였고, 1998. 11.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 2004. 9.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되었다.

북한 해운법은 해운분야에서의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승인한 해운관계 국제협약은 북한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문헌에서는 「해운법」에서 언급한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그규칙 등을 들고 있다.<sup>57)</sup> 우리나라 해운법에서는 국제협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sup>58)</sup> 또한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30조(사업개선 명령),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등에서 국제협약을 존중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수로법」을 2004. 3. 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채택하였다. 「수로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각국의 수로 관련 업무 조정, 해도 등의 통일화, 수로측량의 기준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70년 9월에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05년 현재 정

57) 림영찬, “해상침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19면 참조.

58) 우리 「헌법」 제6조제1항 참조.

회원국은 75개국으로, 한국은 '57년, 북한은 '87년에 동 기구에 가입하였다. 『동아시아수로위원회(EAHC)』는 IHO 산하 14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현재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9)</sup>

북한은 2005년 8월 17일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동아시아수로위원회(EAHC)』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북한은 2004년 6월 중국을 경유하여 당시 의장국이었던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에 회원국 가입을 신청, 한국 등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북한은 동서로 단절된 해안선과 육로위주의 수송체제로 인하여 해상운수 부문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이나, '80년대에 들어서 무역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간 협정체결, 국제기구 가입 등 해상운수분야에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왔다.<sup>60)</sup> 북한의 EAHC 가입은 남북간 해운협력 실무접촉 이후 남북간 선박 왕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 상호간 수로정보 및 해도자료의 교환, 공동 해양조사 등으로 남북간 항해안전을 확보, 남북한 해상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sup>61)</sup>

또한 최근 북한은 ‘배 감시조정센터’의 신설을 보도하였다(4.27, 조선중앙통신). ‘배 감시조정센터’(국가해사감독국 산하)는 연안과 대양에서의 해상 및 항해 안전, 해상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86. 4월 가입)의 선박 장거리 위치추적제 이행의무에 따라 '09.7월부터 시범운영해오던 『배 감시조정센터』를 이번에

59)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54호, 2005. 08. 18

60) 즉, 국제해사기구(IMO)('86) 및 국제수로기구(IHO)('87) 가입, 쿠바('84)·싱가포르('88), 중국('02), 시리아('05)간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등

61) 남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5. 8.10~12)을 통해 ①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 추가 ②북-북 항구간 직접 운항시, 우리측 해역의 해상항로대 이용 허용 ③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 ④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 중 보장 노력 ⑤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 교환 등을 합의하였다.

정식 출범시킨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장거리 위치추적제(Long Range Identification & Tracking, LRIT)는 9.11 테러를 계기로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을 위해 도입되었다('09.1~6월 시범 운영, '09.7월 정식 운영). 이 제도는 선박을 이용한 테러나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의 위치를 추적해 그 정보를 항만국이나 연안국에 전송하여 항만국이나 연안국이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있도록 한 체제이다. 2009. 9. 29자 『노동신문』은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배장거리식별추적체계 이행과 관련하여 그를 위한 배 감시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09. 1월부터 국토해양부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LRIT 국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sup>62)</sup>

이와 같이 통상의 기반 구축을 위한 분야는 국가간의 소통 원활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법령에서도 대체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2. 보건의료 관련 법령

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은 북한이 이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이 낮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협력을 얻기 쉽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북한의 보건의료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었다.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을 제정한 뒤, 1997년 이후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공중위

---

62)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993호, 2010. 05. 06

생법, 식료품위생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것은 1995년경부터 본격화된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북한사회에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을 의료보건사업에 광범위하게 동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개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이완분위기를 다잡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63)</sup>

북한 『인민보건법』 제7조는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 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 준다”고 규정하여 망명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해 인도적 이유와 사회주의이념상 동질성 차원에서 치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제8조에서 “국가는 보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의약품관리법』은 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로 채택되어, 1998년 한 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의약품관리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이 '90년대 중반 경제난·식량난에 이어 보건의료체계마저 붕괴되자 평양에 <긴급구호지원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 개선사업, 필수약품 제공, 의료체계 복구사업 등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97년 이래 매년 10.20을 <민족면역의 날>로 설정하고 매년 2백만명의 아동들에게 소아마비백신, 구충제, 비타민A 등을 지원해 왔다.<sup>64)</sup>

63) 서재진 외, □□북한 제·개정 법률 분석을 통해본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 (통일부 수탁과제), 통일연구원, 2005, 29~30면 참조.

64) 북한은 1973.5 WHO에 가입하였고, WHO는 2001.11 <평양상주대표부>를 개설하였다.



### 3. 경제개방 관련 법령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령은 경제특구법을 비롯하여 외국투자, 무역, 회계, 금융 등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경제개방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무역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외화관리법」, 「회계법」 등을 중심으로 국제화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무역법

□□무역법」은 1997. 12.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되고 1999년과 2004년에 걸쳐 수정보충되었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약과 협정 및 관례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역법 제7조(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원칙)에서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9조(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에서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역법은 국가간의 교역을 전제로 하는 한 본질적으로 국제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무역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38조(무역발전의 대외적 환경조성)에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장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역법은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경우로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 경우(제40조

제4호 및 제41조제5호)를 들고 있어 관련 국제협정이나 조약 등을 준수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무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 개선에 착수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내부적 문제점과 공산권의 몰락 등 외부적 충격의 누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 그리고 식량의 부족으로 1990년 이후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서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정책 등 과거의 폐쇄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운영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보완작업과 국가통제력 강화를 통하여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sup>65)</sup> 이는 정책의 상호모순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개혁·개방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대외경제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제도를 법제화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방어적인 경제정책을 통하여 내부정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부의 경제·기술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66)</sup> 북한경제가 1999년에 들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의 중요한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67)</sup>

65) 북한 무역성 김용문 부상의 인터뷰에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참조.

66) 임강택, “대외무역정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9월호, 16면 참조.

67) 북한은 1999년도에 6.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7월호, 107면 참조.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및 제도정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북한은 1993년 말부터 농업·경공업·무역 등의 3대제일주의를 채택<sup>68)</sup>해 왔으나, 이 가운데 ‘무역제일주의’의 정책기조가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경제난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수출을 무리하게 증대시키는 노력을 지양하고, 국내경제의 생산정상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sup>69)</sup> 북한의 무역성 부상은 무역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지금까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해 왔고, 현재도 이 노선에 변화는 없다. 다른 아시아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높지 않다”고 전제하고, “사회주의시장의 소멸에 의해 일시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지 않고 타국에 전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위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무역을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up>70)</sup> 이는 북한 당국이 한계에 도달한 수출 증대와 외화벌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붕괴상태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는 방편으로 관광산업과 같은 비제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진력할 것임을 피력한 것이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적·제도적 정비 및 보완작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와 동시에 변화한 국제

---

68) 3대제일주의는 1993년 12월 당중앙위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3대제일주의에 대한 북한측의 자세한 설명은 김웅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 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참조.

69) 북한은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을 통해서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방도”가 아니며, 대외무역사업도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 9. 17.

70) 朝鮮問題研究所, 앞의 자료 참조.

환경에서 자본주의시장 접근에 적합한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무역법』의 채택을 통하여 경제난의 와중에서 이완된 무역질서의 체계화를 추진하였으며,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던 대외무역을 국가 외에 사회협동단체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제32조)고 규정하여 외화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증재법』을 채택하여 무역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분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이후부터는 3대제일주의를 탈피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들면서<sup>71)</sup> 이를 경제과학전선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다.<sup>72)</sup>

## (2)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계약법』은 1995. 2.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로 채택되고,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이 법은 1985년 3월 중국이 채택한 『섭외경제계약법(涉外經濟合同法)』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71) “우리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 진군을 다 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 200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참조.

72) 정치사상전선, 반제군사전선, 경제과학전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이다. □□노동신문□□ 2004.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참조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법적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73)</sup>

이 법의 목적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제1조)하고 있다. 이 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경제법적 측면에서 국제화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74)</sup>

### (3) 대외민사관계법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1995. 9. 6)로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1998. 12. 10)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제1조)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 최초의 국제사법으로서 북한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와 국제 민사소송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한 입법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이 법은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재산관계, 가족관계, 분쟁해결 등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 및 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즉, 북한의 법인이나

73) 신용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1995. 8, 20면 참조.

74) 신용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앞의 논문, 21면.

75)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00면 참조.

국민이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가족, 상속 등의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으로써,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필요하게 된 법률의 하나이며, 그 본질상 국제화의 전형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과,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북한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 (4) 대외경제중재법

북한은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이전까지 북한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1995년에 채택한 『중재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북한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다.<sup>76)</sup> 그 동안 북한에서의 대외무역중재는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회 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1956년 11월 24일 시행)과 역시 같은 날짜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 그리고 1989년 1월 4일 국제무역추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된 『중재심문규칙』<sup>77)</sup>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중재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외국인투자 및 대외거래 관련 법률들에서 단편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여 대외경제관계의 총괄적인 중재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76) 중국의 경우에는 1994년 8월 제정된 『중재법』 제7장에서涉外중재특별규정 9개 조항을 두어涉外경제무역, 수송 및 해상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77) 이것의 영문판인 『Rules of Hearing』은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264~274면 참조. 그 번역문은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 참조.

이전까지 북한과의 무역거래 또는 투자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북한 자체의 신뢰성 부족, 즉, 낮은 신용도, 높은 정치적 위험, 정보의 비공개성 등과 아울러 국제적 상거래 및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으며, 중재제도도 그 중의 하나였다.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법 제7조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제적인 기준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방법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었다. 특히 분쟁해결의 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천명한 점 등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중재법이 과연 공정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sup>78)</sup> 이 법에는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sup>79)</sup>에 가입

---

78) 다른 글에서는 북한이 대외경제계약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가 대외경제중재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9년 5월호 및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3면 참조.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강제중재가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대외경제중재법 제5조)에 의해 적용되는 임의중재이며, 대외경제중재에 관한 북한 내부의 절차에 관한 법이므로, 굳이 제3국 중재기관에 관해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외경제계약법 등의 제3국 중재기관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사계약 또는 국가간의 교역에 관한 협정 등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79) 이른바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협약’

하지 않고 있어 국제규범의 준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무역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조를 통해 문건송달, 증거조사 및 수집, 판결 및 재결의 승인 및 집행 등 분야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향후 이 부문에서 계속적으로 법규범과 규정들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충,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80)</sup>

### (5) 외화관리법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외화관리법』을 채택하고,<sup>81)</sup> 이어 1994년 6월 27일 정무원 결정으로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승인하였다.

외화관리는 대외적인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제도로서 그 내용은 한 국가의 대외개방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국가에 의한 집중관리 및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화관리법 제2조는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이 속한다.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지불수단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도 외화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82)</sup>

또는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함.

80) 손경원,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222~223면 참조.

81) 이는 같은 해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정보충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되었다.

82) 외환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북한과 상당히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통화”는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하고, “지급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



북한의 외화관리에 관하여는 1985년 합영법시행세칙에 8개 조문이 있었으나, 경제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1993년 1월 단행법으로 『외화관리법』이 채택된 후 1994년 6월에는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을 제정하는 등 북한당국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다른 법령들이 상벌규정이 대체로 미흡하고 절차적 규범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는 등 외화관리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외화관리법은 각 개별법제에 산재해 있는 외화관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외국기관·외국인·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및 북한주민에까지 적용되는 외화관리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이다.<sup>83)</sup>

북한 전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외화관리법 이외에도,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경제특구의 외화관리 등에 관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화폐유통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기타 다수의 경제개방 및 외국인투자관련 법률들에도 외화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다.

## (6) 회계법

198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김정일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이러한 변화는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사실상 정부회계가 전부이던 형편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합영·합작이나

---

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83)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한국무역협회, 1998, 235~236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제를 대폭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을 위한 회계법제도 자연스럽게 제·개정되게 되었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sup>84)</sup>를 비롯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설치와 함께 이들 지역의 기업들에 적용할 회계법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회계제도의 모형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있고,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재무회계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회계법 제8조에서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적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sup>85)</sup>

북한의 회계법제는 크게 북한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각각의 법제는 그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4) 북한은 2002년 『라선무역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개칭하였다.

85) 북한의 회계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

회계관련 일반법제는 북한 자체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즉,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으로 『회계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의 근거법으로는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 등이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과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을 두고 있는데<sup>86)</sup>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상당히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 초기에는 경제특구, 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특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가장 먼저 설치된 경제특구였던 현재의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칭하고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고, 각 경제특구별로 지역적 특성, 외국인투자 유인대상, 주요 목적사업 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통된 법체계를 적용하려던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합영법』, 『합작법』 등 일부 기본적인 법규를 제외하고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 관련법과 시행규정을 정비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로 남한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특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반영한 회계법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법』의 시행규정들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개성공업

86) 기존의 하부규정들인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그리고 부기검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등이 개폐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 검증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회계제도와 관련한 각 분류의 법제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 점차 진화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은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북한은 남한보다도 비교적 빨리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북한은 1974년에, 한국은 1979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1980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국제출원을 규율하는 마드리드 협약에 이어 1993년에는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2003년 4월에는 문화·과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에 연이어 가입하였다.<sup>87)</sup> 동시에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비를 꾸준히 진행했다.

북한 헌법 제74조에서는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이후 상표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법, 원산지명법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제 정비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남북한간 교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인데,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87)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844호, 2007. 06. 17.

북한이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간 교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남한에서의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5. 과학기술 관련 법령

북한이 최근 대외 과학기술협력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낙후된 생산시설과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도입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중시노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이며, 금년 『노동신문』 공동논설에서도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다. 첨단을 돌파하는 여기에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며 모든 것이 흥하고 유족한 사회주의낙원을 일떠세우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88)</sup>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도 점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은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국제화’, ‘세계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른 분야로도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sup>89)</sup>

북한은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성공을 위해 ‘자력갱생’만으로는 과학기술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대신해 근간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심을 두어왔다. 북한

88) □□노동신문□□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참조.

89)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nktech.net>), 『북한의 과학기술 대외협력 동향』(2004. 11. 1) 참조.

입장에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어 선호의 대상이다. 북한은 국제전기통신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유엔개발기구(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과 같은 UN산하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sup>90)</sup>

이에 따라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들도 국제협력과 관련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 (1) 과학기술법

북한은 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과학기술법』을 채택(2005. 12.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하였는데,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먼저, 제6조에서 “국가는 세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어 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 배합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1조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경제지도기관, 무역기관은 특허기술수입, 합영합작기업창설, 설비납입, 과학기술정보수집 같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려는 기술의 발전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데 기초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진기술도입대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

90) NK테크, 『뉴스레터』 145호, 2008. 2. 14 참조.

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연구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제34조는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심의, 도입의 기본요구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36조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수행과정에 이룩된 성과, 새 기술에 의하여 꾸리는 생산기술공정과 기업소건설을 위한 기술과제, 기술수출입제안을, 국가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 특허, 창의고안 같은 것을,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과학기술성과, 선진기술도입, 발명, 창의고안 같은 것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국가발명심의위원회,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등의 임무를 정하고 있다.

제42조에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양성생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생선발은 실력본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 양성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53조에서는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의 필요한 과학기술도서와 잡지를 정상적으로 들여오며 과학기술정보자료기지와 컴퓨터정보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려 과학기술정보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자료의 확보를 위한 조치들에 관해 정하고 있다.

## (2)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이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2004. 12.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7호로 채택)이 있다. 이 법 제8조(국제조약과의 관계)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규정하고, 제46조(국가생물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관리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국가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국가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과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국가생물안전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하여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3) 원자력법

또한 「원자력법」(1992. 2.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1999. 3. 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은 제5조에서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1985년 12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지만, 북한핵문제로 IAEA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시작하자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선언, 1994년 6월 13일에는 IAEA마저도 탈퇴를 선언했다.

## (4) 기상법

과학기술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제적 정보교환이 중요한 「기상법」(2005. 11.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8호로 채택)에서도



제7조(기상분야의 교류와 협조)에서 “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1946년에 기상관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상·수문을 비롯해 해양·농업·수산업·항해 등에 기상관련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기상관련설비들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중국 기상국은 북한에 많은 기상관측자료, 통신설비들과 관측설비를 기증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1985년 이후 기상부문 교류협력 의정서 교환 등 동 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특히 2000년 이래 거의 매년 중국으로부터 기상설비를 지원받아 왔다.<sup>91)</sup> 북한이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증산 과업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하는 등 농업의 부진 탈출을 위해 주력함에 따라, 홍수·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첨단기상장비 도입을 통해 기상예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지원은 세계기상기구(WMO, 북한은 '75년에 가입)의 ‘자발적 협력프로그램’(VCP)<sup>92)</sup>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북한은 1995년 자연재해 이후 기상관측예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WMO에 두 차례에 걸쳐 첨단기상설비 지원을 요청('95, '01년)한 바 있다. 2002년 7월 영국도 VCP에 의거 컴퓨터 등 기상통신장비를 북한에 기증한 적이 있다.

## 제 4 절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과 전망

### 1.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

북한에서 법령 국제화의 형태는 대체로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그리고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등 세 가지로

91)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27호, 2005. 01 . 31

92) VCP(자발적 협력프로그램): 세계기상기구(WMO)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상호협력 지원사업.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중에서 법령 국제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역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서이다. 국제규범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국내법에 다시 규정함으로써, 국제화의 방향과 정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법령의 국제화 추세를 관찰해 보기로 한다.

### (1) 회계법제의 사례

북한 회계법제의 발전과정은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크게 분류해 보면 첫째, 『회계법』을 비롯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및 단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둘째,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에 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제, 셋째, 개성공업지구 등 특정 경제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법제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분류에 속하는 회계관리법제는 그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연히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93)</sup> 이에 따라 각 분류의 법제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회계관리제도로 진화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에는 점차 국제회계기준으로 수렴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한다.<sup>94)</sup>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93)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전체적인 분석은 즐고,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

94) 자본시장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회계기준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형태로 제정·공표하며, 2007년 말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공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채택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sup>95)</sup>

북한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의 회계관련 법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으로 수렴해 가는 이러한 과정은 북한 법령 국제화 추세의 한 단면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 1) 회계관련 일반법제

북한은 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회계법』(총 5장 48개조)을 채택하고 동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 제14호로 승인하였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후 최고인민회의가 다시 법령으로 승인한 것은 회계법이 그만큼 중요한 부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회계법의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회계관련 정책·제도 및 해석에 대한 체제·절차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 주체를 지정하여 명확히 하였고, 대상은 북한내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회계작성 지침 등을 제시해 각 주체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국제회계기준 인터넷사이트(<http://ifrs.fss.or.kr/ifrs/main.jsp>) 참조.

95) 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인터넷사이트(<http://www.kasb.or.kr>) 참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의 재정적 실리 보장을 강조함으로써(제1조) 경제운영 방침이 과거 생산량 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북한의 회계법에는 회계법의 기본, 회계계산, 회계분석, 회계검증, 그리고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회계법은 기본적인 회계 관련 정책과 제도, 해석에 대한 체제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회계절차나 회계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회계의 주체를 기관, 기업소, 단체로 구분하고 각 주체간의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회계 관련 시행규정들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지만, 회계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96)</sup> 이러한 점에서 회계법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의 하부규정으로서 회계와 검증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및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과는 내용상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그 규율대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법 제7조에서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계법 채택을 전후하여 회계제도에 관한 관리들의 해외연수를 매우 강화한 것도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국제적 회계기준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97)</sup>

96) 김병호, “북한 기업의 회계관리 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제1권 제3호, 2004. 12, 50면.

97) 1998년 2월엔 나진·선봉지구내 나진기업학교 교원 14명이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기업회계, 재정, 경영, 재무관리 등을 학습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무역성, 재정성, 민경련 등 북한관료들 다수가 각 1주일간씩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일본 ERINA와 중국 요녕성사회과학원 공동으로 개설한 『중국 회계법 및 회계원칙 강의』

법 제8조에서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법 제8조의 규정과 유사하다. 회계법에서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하고,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차적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접근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회계법제는 경제개방과 관련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중국의 회계법제를 기본적인 모델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sup>98)</sup>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중국과 같이 국내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외국투자기업과 함께 일원적으로 적용되는 회계법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법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회계규정, 특히 그 중에서도 세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과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sup>99)</sup>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상당히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

(2004년 7월)와 『중국 회계법 및 회계사무소 운영규정』(2005년 8월)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윤병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향후과제 - 중국 및 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0월호, 2005. 10. 12면 및 32면의 <표> 참조.

98) 북한 회계법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에 관해서는 줄고,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31~36 참조.

99) 이 규정들은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규정』과 『외국인투자은행 부기계산규정』, 그리고 부기검증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등을 개폐하거나 보완한 규정인 것으로 생각되나 법령의 정확한 개폐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 법제의 특성상 확인할 수는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1999. 12. 4 내각결정 제91호로 채택, 2005. 1. 17 내각결정 제4호로 수정)은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 등의 하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sup>100)</sup>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정이지만 기업 내부의 회계보다는 회계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리측면에 치중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계산을 명확히 하며 재정관리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었으며, 일반규정, 자본의 구성과 그 이용, 재정계획, 생산비계산 및 자금관리, 재정결산 및 이윤분배, 재정청산, 그리고 감독통제 등을 담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2004. 11. 29 내각결정 제49호로 채택)은 내용상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을 전문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명칭을 『부기검증규정』에서 『회계검증규정』으로 바꾼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기검증규정』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회계검증의 원칙에 관하여 객관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 이외에 새로이 ‘독자성’을 추가하여 독립적인 회계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3조). 그리고 규정의 적용범위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북한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4조). 또한 회계검증의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검증, 계산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 등을 설정하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검증원의 자격과 임무, 회계검증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도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00) 북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영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북한 영역 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북한의 재정관리규정과 기존의 부기계산규정은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회계검증규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는 북한의 기준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민으로 구성된 회계검증원이 회계 계산과 결산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성한 회계검증보고문건에 의하여 검증된다.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회계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제70조에서 “중앙재정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료해, 검열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와 같은 중앙재정기관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과 회계에 북한 당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존치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회계규정들은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 즉,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등에 비해서는 자율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관련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최소한 개성공업지구의 회계관련 규정들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북한 내부에서 적용되는 『회계법』과는 달리, 개성공업지구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법제의 근거법으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

설·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그 시행규정으로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이 있다.<sup>101)</sup>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 및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등을 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남한측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창설형식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제4조)고 규정하여 그 기업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에는 회계와 관련하여 회계결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복한 『회계법』 제22조에서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기별로도 회계결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회계검증도 연간경영회계결산서로 한정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에서 “결산검증은 경영활동결과와

101)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의 경우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헌법 제110조 제2호), 내각(1998년 헌법 이전에는 정무원)에서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9조 제2호). 일반적으로 ‘시행규정’ 또는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는데, 대부분의 규정들이 내각(또는 정무원)의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다른 규정들과 달리 유독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다른 경제특구들과 달리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가 남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경제협력문제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관련한 분기, 연간결산문건에 대하여 한다. 기업의 분기결산검증은 다음 분기 첫달 13일까지, 연간결산검증은 다음해 2월안으로 받아야 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에서 “분기재정결산문건은 결산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연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에 내야 한다”(제56조)고 규정하여 분기결산과 연간결산을 회계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sup>102)</sup> 어쨌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에 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에서는 회계준거규정으로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환경과 다름없이 만들겠다는 매우 상징적인 규정으로 보인다.<sup>103)</sup>

개성공업지구의 회계법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 등과는 달리 대부분 남한측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법규의 대부분을 남한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

102)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제55조 후단에 따르면, 분기재정결산문건은 ‘필요에 따라’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드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103)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4조에서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조항은 2006. 2. 6.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로 대체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내포는 같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들과 달리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규정들이 보다 자본주의적 회계원칙에 근접해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서 회계계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하고,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계산의 원칙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결산재무제표에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손익처분계산서나 현금유동표와 같은 문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유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자료를, 재정상태 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이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산상의 재무제표 요구는 자본주의사회의 기업회계기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회계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되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게 되었다. 즉, 회계법이나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계산

규정』 등과 달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처분계산서, 수입, 비용, 자본, 이익 등의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등이 한국측 기업들을 주로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배려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법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규정에서 아직도 분기일기장(분개장), 계시(계정), 재산(자산), 채무(부채), 조월이익(이월이익), 현금유동표(현금흐름표) 등에 있어서는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검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관찰된다.

첫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7조에서 회계준거규정으로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환경과 다름없이 만들겠다는 매우 상징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둘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제8조에서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2007년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셋째,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제6조에서 회계검증준칙의 제정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6조에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2007년에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과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이 제정된 바 있다.

넷째, 회계검증규정 제5조에서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간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계검증사무소의 독립성을 재차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회계검증규정 제15조에서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그리고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회계기준에 대한 접근, 회계기준과 회계검증의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가 정비되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검증준칙』이 제정됨으로써 회계기준 및 검증에 대한 미비점이나 자본주의 사회 회계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분쟁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관련 법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 회계법제가 국제회계기준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회계법제 국제화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법제는 북한에서 상당히 국제화가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지만, 사회주의 법제의 특성상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국제화를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즉,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 기업체들은 오늘 국내의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도 회계계산을 진행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체들은 세계의 <일체화>흐름 속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발전도상나라들의 새끼

회사들을 지배통제하기 위한 계산기준으로 리용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출현하게 된 경제적 기초는 국제독점으로서의 다국적기업체가 세상에 나온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4)</sup>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부당성은 한 마디로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회계문제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며, 그 근거로 첫째, 국제회계기준이 회계문제에 대한 국제기준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 둘째, 국제회계기준이 회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국제회계기준이 정부급 국제기구의 간섭과 통제 밑에 작성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회계기준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국제회계기준이 몇몇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며 국제독점자본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인 국제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105)</sup>

이러한 비판은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사회주의국가로서의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되돌아본다면 이러한 관점을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2) 상업은행법의 사례

### 1) 상업은행법 제정의 의의

북한은 2006. 1. 25 「상업은행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29호)을 채택하였고, 그 이전인 2004. 9. 29 「중앙은행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을 채택하였다.<sup>106)</sup>

104) 강철수, “국제회계기준의 부당성”,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33면 참조.

105) 강철수, 앞의 논문, 33~35면 참조.

106) 이전까지 북한에는 중앙은행법이 없었으며, 다만, 1946년 10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가규율을 강화하여 북조선중앙은행을 창설할 데 대하여”와 그 부칙인 「중앙은행 규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전까지 북한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국가재정 관련업무, 상업은행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재정 관련 업무는 북한의 재정이 일반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공공재 공급뿐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내용이 훨씬 크고 다양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은행이 국가의 재정적 통제기관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은행을 이용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은행을 이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화폐적 공간의 이용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sup>107)</sup> 이러한 은행에 의한 재정적 통제를 북한은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sup>108)</sup> 이처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은행의 근본적 임무이며, 경제건설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로 인식된다. 따라서 기관·기업소에 대한 재정자금 공급과 통제는 재정관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해왔기 때문에 상업은행도 없었으며 상업은행법도 불필요하였다. 단일은행제도는 중앙은행 기능과 국내 금융업무를 하나의 대형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모두 담당한다는 의미이며 대외결제 등 대외금융업무는 ‘조선무역은행’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전문은행 등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여 단일은행제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들은 대부분 특정 권력기관의 무역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107) 김소영,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은행의 본신임무”, □□경제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28면 참조.

108) ‘원에 의한 통제’는 은행이 각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에서의 상업은행과는 차이가 있다.<sup>109)</sup>

그런데 『중앙은행법』 제정과 함께 일반 상업은행 업무 및 보험 업무는 분리하게 됨에 따라 국가재정 관련 업무도 크게 축소되고 중앙은행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대신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여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 이외에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업무와 관련된 법으로는 중앙은행의 화폐조절사업에 관한 『화폐유통법』, 외국인 설립은행과 관련한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있다.

『상업은행법』 제정의 목적은 북한의 은행제도를 그 동안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서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은행제도가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상업은행법 제정 이외에 『중앙은행법』 제32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앙은행법』 제32조<sup>110)</sup>는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하는 대상으로 금융기관만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 기업이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하던 기존의 제도<sup>111)</sup>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적 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 수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에 대한 대출 및 예금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대출 및 예금을 취급한다. 상업은행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여 생산부문에 공급하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상업적 이윤동기가 업무수행 원칙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계획에 의한 기업관리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109)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손희두·문성민,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2~126면 참조.

110) 『중앙은행법』 제32조(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 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111) 그동안에는 기관·기업소·단체 및 개인이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돈자리)를 개설할 수 있었다.

있다. 따라서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은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가장 유력한 수단을 잃는 것이며,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금융시스템이 국내금융에서 국제금융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12)</sup>

## 2) 상업은행법의 과제

북한이 이러한 금융개혁을 추진한 배경은 그동안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재정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금융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영 기업에 지원하던 국가 재정자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부족자금을 은행대출로 충당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분야의 제도개혁이 뒤따르지 않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법 제정과 함께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도 이러한 금융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상업은행에 해당하는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회의가 2010. 3. 10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달되었고, 국가개발은행 규약초안, 국가개발은행 운영방안 및 2010년 재정예산안, 국가개발은행 전문가위원회

112) 중국에서도 1978년 개혁·개방노선 채택이후 1979년부터 몇 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면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1984년 중국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다만, 정작 이러한 변화의 법적 근거인 중국인민은행법은 1995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



규약, 국가개발은행 경영기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sup>113)</sup>

북한이 이처럼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장 중점을 둔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그 현실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 취지에 맞는 상업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법 제정으로 은행제도의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최근 들어 북한의 개혁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북한이 상업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취지에 맞는 상업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민들에 대한 상업은행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예금기피현상을 완화하여 유희화폐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회복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은행법』 제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금의 지불과 비밀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상업적 원칙에 따른 예금 및 대출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이자지급이 필요하다. 기존 중앙은행의 예금이자율은 3~4%의 낮은 수준인데 반해 암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는 시중의 유희자금을 은행으로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대출은 그동안 경제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공되는 등 다소 방만

---

113) 『조선중앙통신』 2010. 3. 10.

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원적 금융제도 하에서는 은행 대출이 재정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말아야 하며 철저하게 상업적 원칙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출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관련 제도를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넷째,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시장에서의 물가안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현금통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통화정책이 법적으로는 예금통화까지 통화정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준비율, 채권 매매, 기준이자율 정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장경제연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업은행제도의 도입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제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국제금융시스템을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침탈이라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국제은행들의 설립과 경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국제은행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첫째, 그것이 개별적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들을 감독관리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급 국제은행들을 감독관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감독관리의 구체적인 대상이 주로 각이한 형태의 국제은행해외기구들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감독관리가 2중적이라는 것, 셋째, 국제은행해외기구의 설립 및 경영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설립 및 경영을 허가, 금지, 제한 및 통제하는 것을 감독관리의 기본 내용으로 한다는 것, 넷째, 국제은행제도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국제법적규범이 국제은행감독관리에 관한 최저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임의성관계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은행제도를 국제은행의 설립 및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와 관련한 국내법 및 국제

법규범의 총체이며, 이러한 국제은행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국제 금융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14)</sup> 이러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증대는 향후 북한 금융시스템과 법제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법령 연구의 국제화 추세와 전망

북한 법령은 비단 법령 자체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법령 연구의 국제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물론 법령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화의 초기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접근도 결국 북한법제의 발전의 외연을 넓혀줄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더구나 근래에는 국제화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국제화 또는 국제적인 규범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경제법제, 특히 국제금융제도에 대한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주의이념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에 관한 한 연구는 “오늘 세계적인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은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사명과 어긋나게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나라들의 경제적침투를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중략) 국제통화기금의 부당한 가중투표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기구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든 문제를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 목적에 유리하게 토의결정하도록 하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114) 김성호, “국제은행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37~38면 참조.

납은 경제질서의 하나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5)</sup>

반면, 같은 시기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국제은행제도에 관하여 “국제은행제도는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국제은행들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제도이다. 다시 말하여 국제은행의 설립 및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와 관련한 국내법 및 국제법규범의 총체이다....(중략) 우리는 국제은행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제금융발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있으며,<sup>116)</sup> 또한, 국제대부제도에 관하여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사이에 원금과 리자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간 자금을 꾸어주는 경제활동이며 그러한 경제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국제대부제도이다....(중략) 모든 대외사업부문일군들은 국제대부제도의 원천에 대하여 잘 알고 옹계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와 같이 중립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존재한다.<sup>117)</sup>

이처럼 국제화에 관한 중립적 또는 긍정적 시각의 연구는, 환경보호라는 일견 탈이념적으로 보이는 주제에 관해서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이 인간환경, 생태환경에 엄청난 해독을 끼치고 있는데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인류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미일반동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sup>118)</sup>와 같이 마무리하는 북한 저작들의 연구행태를 감안하면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sup>119)</sup>

115) 리철웅, “국제통화기금 가중투표제의 부당성”, □□정치법률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40~41면 참조.

116) 김성호, “국제은행제도의 본질”, 앞의 논문, 37~38면 참조.

117) 김원철, “국제대부제도의 원천”, □□정치법률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39~41면 참조.

118) 한영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협력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6권 제1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141면 참조.

119) 이와는 달리 같은 환경분야에서도 생물다양성보호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관심밑에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채택

이처럼 법령의 국제화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은 작금에 체제수호와 개혁개방의 갈림길에서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사회와 경제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처지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국제환경에 대한 제도적 연구의 축적은 북한사회의 개혁개방과 법령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데 커다란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되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을 잘 알고 이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 관리능력을 빨리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리수영,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 □□정치법률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43~45면 참조.

## 제 4 장 북한 법령의 국제화와 남북한 협력

### 제 1 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사회주의이념을 기반으로 출발함으로써 자본주의국가들로 둘러싸인 국제관계에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해 북한 법령의 국제화는 그 시기의 국내외적 환경에 따라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또한 그에 따른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

#### 1.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

##### (1) 북한 헌법상의 한계

북한의 현행 헌법이 초기의 헌법에 비해 상당 부분 국제화를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제화에 장애가 되거나, 법령의 국제화에 부정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는 다소간 존재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1조에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강조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제12조에서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19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함을 밝히고, 제26조에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선언하면서, 제38조에서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제41조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자주적 사회주의국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 등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의 움직임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해외동포 보호, 통상의 촉진, 국제기구의 원조 유인, 경제개방, 대외적 지적재산권 주장,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그리고 국제적 정보자료 교환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극히 필요한 부문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국제화를 용인해 왔다.

## (2) 사회주의법무생활과 사회주의법치국가

김정일체제 수립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북한의 법학분야 관련 논문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 외에도 『사회주의법』, 『사회주의법치국가』, 『사회주의법적통제』와 같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sup>120)</sup>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법의 중시, 준법의식의 고양, 인치로부터 법치로의 변화, 통치시스템의 법화 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최근의 입법동향을 보아도 헌법을 제외한 개별법에서는 상당부분 이념성이 완화되었으며 실용주의적인 입법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그리고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헌법관을 고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법치주의, 사회주의법치국가라는 것은 그 출발부터 계급적 차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저작에서도 사회주의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사회주의법이 노동계급적인 법으로부터 초계급적인 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견해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이며, 사회주의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극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sup>121)</sup>

또한 사회주의법치국가에 대한 북한의 저작에서도 “①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사업과 생활을 철저히 법이 정한대로 해나가는 국가이다, ③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치국가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기본 전제로서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당이 영도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의

120) 진유현,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제51권 제1호, 45~49면 및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등 참조.

121) 김정일, □□사회주의국가와 법의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에 대하여(1962년 7월 13일)□□(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5~6면 참조.



영도를 받는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가 『법치상주의』를 떠들면서 법을 정치의 우위에 놓는 부르조아 『법치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22)</sup>

이러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한편으로는 북한법제의 변화나 국제화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데, 이처럼 개별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사회주의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성 간의 긴장관계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법령 국제화의 규범적 과제

### (1) 법령의 규범성 확보

북한은 사회주의적 측면에서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건, 아니면 체제홍보적인 측면에서건 환경, 보건의료, 노동, 인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법령에서 다소간 국제화와 개방적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의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할 뿐, 어느 정도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다양한 시민단체의 존재 등을 통해 규범의 형해화를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들이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과연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규범들이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22) 진유현, 앞의 글, 47~48면 참조.

북한법제를 각 부문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헌법 및 형사법제 분야에서는 권력구조나 사회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의 규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들의 경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사법제도인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이나 신소청원법 등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행정법제 분야에서는 법제의 성격상 대체로 다른 분야보다는 규범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북한이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 관련 법령들이 오히려 실효성면에서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장애인보호법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식료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 등 식의약품 관련 법령만 살펴봐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식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생,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관리를 논할 수 없는 처지이다.

경제관련법제 분야는 최근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개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규범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련법제를 대내경제분야와 대외경제분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대내경제분야의 법령들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욕구와 현실을 정책과 규범이 뒤쫓아가는 입법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대외경제분야의 법령들은 북한정권의 경제개방 의지를 반영하듯 신속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입법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체제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체제수호적인 태도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입맛에 맞는 전향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는 입법을 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측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 많은 법령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당국의 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2) 개별 법령상의 과제

북한의 개별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화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제재나 의혹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금융거래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하고, 제4조(법의 적용대상)에서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자금세척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마약수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약관리법』 제5조(마약의 수출입원칙)에서 “마약은 필요에 따라 수출, 수입할 수 있다. 국가는 마약의 수출과 수입을 정해진 무역질서와 국제질서에 맞게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마약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에서는 “국가는 마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법』(1992. 2.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1999. 3. 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 제5조에서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협약의 준수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핵의혹에도 불구하고 IAEA나 NPT 등과 관련하여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등 국제적인 조치에 순응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통상인프라와 관련해서 살펴보다도, 해운법은 여전히 자국 화물 우선적취제도와 자국선박에 대한 자국화물 유보를 명시한 ‘자국선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 선박과 화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국 외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하는 외국의 선박회사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장기적인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북한 해운법은 북한 선박에 의한 연안물류의 독점(해운법 제37조), 북한 수역에서의 해난구조 및 인양작업에 대한 북한 해난구조기관 이용(해운법 제71조) 등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여러 곳에서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법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해상물류관련법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서 선박대리기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외국선박의 영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리업무(해운법 제63조), 외국선박의 수리(해사감독법 제11조), 외국선박의 운항검사(해사감독법 제23조), 외국선박의 해난사고 보고(해사감독법 제41조) 등의 경우 외국선박은 선박대리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선박의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에서도 상당부분 국가의 후견적 지위를 규정화하고 있다. 즉,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하며,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기관도 감독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감독통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측과 대외계약을 체결한 외국측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영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제11조),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 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제32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은 계약자치의 원칙이 상당 부분 제약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할 때 법령의 정비 및 국제화와 더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부문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서 관련 지식과 국제적인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이 제도의 개선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 1. 법령 국제화와 북한법제 발전방안

#### (1) 법령 국제화에 관한 교류와 지원

최근 들어 북한법령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부문법의 제정과 수정, 보충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998년 헌법 이전에는 상설회의)가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 중 중요한 부문법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91조 및 116조). 2004년 발간된 북한법전에 수록된 법들을 기초로 통계를 내어본 결과, 헌법을 제외한 총 111건의 법 중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한 것이 10건,<sup>123)</sup> 최고인민회의

123) 건설법, 국토계획법, 사회주의노동법, 산림법, 어린이보양교양법, 인민경제계획법,

상임위원회 정령(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한 것이 101건이었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한 법 중에서도 가공무역법, 교육법, 회계법 등은 다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었다.<sup>124)</sup> 총 84건의 법에서 수정, 보충이 있었으나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정, 보충에 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사후 승인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체제 이후 제·개정된 법령은 대체로 북한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법제정기관들에 의한 법령 정비, 즉 ‘법규정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고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법규정리’는 “법제정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일정한 시기와 분야의 규범적 법문건(법규)들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것들의 법적 효력을 다시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5)</sup> 이러한 법규정리는 오랜 기간 법규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시행하는 집중정리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정리로 구분되는데, 정기정리는 법제정사업부서,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나 내각 사무국 법규과 등이 담당한다. 그리고 법규정리의 단계는 법규정리안 작성단계, 법규정리안 심사단계, 법규정리안에 기초한 법규처리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는데, 법규정리안 심사에서는 법규정리안에 들어있는 매개 법규항목들이 현행 당정책에 맞는가, 효력상 높은 순위에 있는 법규와 저촉되지 않는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였거나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과 저촉되지 않는가,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민보건법, 지하자원법, 토지법, 환경보호법 등 10건.

124) 『조선신보』 등 참조. 다만 이들 법령이 북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부문법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25) 리경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학□□(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제50권 제3호, 60면 참조.

우리의 법제처 법령심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법제정과정에 자체가 상당히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법제는 이념적 측면에서나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북한법령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령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측면의 개선과 법제인력의 교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법령의 형식적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법령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수집, 입법, 관리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지식과 시스템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쌍방 각종 법령집의 정기적 교환과 법령관리시스템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1차적인 과제인데, 구체적으로는 법령 제정절차 및 입법기술, 법령집 발간시스템, 법령DB 시스템 구축, 법령입안시스템 전산화, 법령영역, 영문법령집 발간 및 DB시스템 구축, 법령용어 정비 및 법령정보시소러스 구축 등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령정보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교류가 선행된다면, 2차적으로 법제기술적인 대북한 지원 방안으로는 북한 법령집(가제식) 발간 지원, 북한 법령DB 구축 지원, 법령입안시스템 구축 지원, 법령영역 및 영문법령집(가제식) 발간, 영문법령DB 구축 지원, 법령정보시소러스 구축 지원 등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제기술적인 교류와 지원은 쌍방의 체제와 이념에 관련되는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법제인력의 교류이다. 형식적 측면이든, 실질적 측면이든 법령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보와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제인력의 교류는 북한측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성공업지

126) 리경철, 앞의 글, 62~64면 참조.

구나 금강산관광지구를 포함하는 북한내에서의 교류,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의 교류, 남한방문을 통한 교류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류의 내용으로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와 같은 쌍방향 교류도 단시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으로는 후술하는 ODA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법제교류와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기본합의서’(1991)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산하에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된 논의가 남북한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개성공업지구를 통한 법제 교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북한으로 가는 완충지대이자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즉, 북한은 체제에 대한 큰 위협없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자본주의적 법제, 또는 국제기준에 근접하는 법제를 구현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특별구역이자 관문이라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현재 북한측의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 아래 부동산, 기업, 관리기관, 세금, 노동 등 각 분야에 걸쳐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북측과 협의중인 노동안전세칙 등 6개 세칙, 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등 43개 준칙 등을 관리하고 있다.<sup>127)</sup>

이러한 법령과 하부 규정, 세칙, 준칙들은 남북한간 당국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127) □□개성공업지구법규집□□(2009) 참조.



이러한 협의체계를 활용하여 법제의 교류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법령정보자료 및 기술적 관리시스템 교류에서부터 출발하여 법령정보의 관리 지원, 나아가 법제인력의 교류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성공업지구를 법제적 측면에서 문자 그대로 특별구역으로 삼아 남북한 법제의 완충지대이자 통합의 시험대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1) 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

현재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 법체계를 살펴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세 법률이 기본3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고,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교역당사자, 협력사업자 또는 주민의 왕래, 접촉, 반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관한 신고, 허가 및 승인은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민간사업자 이외에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당사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간 교역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각 부처의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교류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입안하여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규범, 즉,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범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절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와 재정자금 동원(『남북협력기금법』)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범규범은 대단히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적용규정으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사업을 위한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농·수산업협력, 식품협력, 의료보건사업지원, 산림복구지원, 해양협력사업 등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이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입법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수립,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법률체계를 정비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하부 시행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북한 핵문제 및 우발적 충돌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영유아 또는 노약자에 대한 지원,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식량 및 식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결정에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결정의 부담을 덜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여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법제의 검토 후 향후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면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법률의 존재는 북한측에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3 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 1. 국제기구와의 공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은 상당히 많은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부감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발전, 그 중에

서도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북한 지원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8년에는 3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4건에 대해 1,604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sup>128)</sup>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복구와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 임상연구, 의약품 관리, 전통의학(고려의학), 공중보건과 역학 분야에서의 기술 및 연구능력, 보건의료인의 기술 제고 및 의학교육 분야를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sup>129)</sup>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북한 말라리아 방제와 관련하여 120만 달러(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02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408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및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 유통·운송시 냉장유통체계) 구축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 사업 등이다. 또한 정부는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해, 2007년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7월까지 일본뇌염 및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실 장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sup>130)</sup>

128)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1면.

129) 황나미, “북한의 보건문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접근전략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2004. 5, 88~90면 참조.

130)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1~142면.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는 2008년 6월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북한 식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WFP를 통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sup>131)</sup>

북한의 보안의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제기구와 외국 민간단체들은 남쪽의 단체들보다 훨씬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등 국제기구들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연대 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협력은 교류협력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의 성격과 분야별로 가능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2. ODA를 통한 법제교류지원

법은 문명화된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지만 그 존재양식과 기능, 그리고 중요성은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정책 또는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존재양식에 관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 이러한 법제에 대한 국가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법제정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정비지원(Legal Assistance 또는 Legal Cooperation)은 문자 그대로 법제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sup>132)</sup> 그 구체적인 대상, 방법 그리고 이념에 관해서는 이 사업에

131) 통일부, □□2009 통일백서□□, 142면.

참여하는 국가, 시기,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임하는 전반적 체제와 예산면에서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대체로 외국에서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ODA)’<sup>133)</sup>의 실시도 지금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금년 1월 25일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적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아직 미약하지만, 제도적으로나 총지원규모에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나 많은 민간단체들도 법제정비지원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ALIN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법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법제정비지원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공여국-수원국의 구분에 따른 일방적 관계를 넘어선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된 국가와 덜 발전

132) 서구적 관점에서는 ‘굿 거버넌스’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으나, 법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제가 다른 법제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협력사업(Legal Cooperation Project) 또는 법제교류지원사업(Legal Exchange and Support Project) 등의 용어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법정비지원사업』을 『법제교류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다.

133)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ODA에 관한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공적개발원조’로 번역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된 국가의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는 인권, 환경, 국제평화, 사회안전, 생명존중 등 다양한 가치들은 전지구적 문제이며,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법제정비지원은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법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소위 선진국도 개발도상국의 법제에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내용, 형식, 경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내용, 형식은 상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다만, 다자간 협력체의 운영,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경비측면에서만 선진국가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성장을 위한 조건없는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 발전을 위한 교류와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ODA사업을 통한 다자간 협력과 네트워크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24개의 주요 ODA 공여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OECD DAC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는 G20은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체를 구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 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체제의 논의와 구축은 매우 중요한 협력방식의 하나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0년간의 독일정책: 1969~79년간 동서  
독관계 발전 중심□□, 1982. 9.
-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 통일연구원, 2004.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연구보고서 95-15,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994.
-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 통일부, 2007. 11.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부문연구□□ 한은조사연구 2002-3, 한국은행, 2002. 4.  
\_\_\_\_\_,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2. 8.
- 박정동,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0.  
\_\_\_\_\_,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0.  
\_\_\_\_\_,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_\_\_\_\_,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_\_\_\_\_,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한국법제연구원,  
1999.



참 고 문 헌

- 법무부, □□북한법연구 I: 통치기구·사법제도□□, 1985.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1997.
- \_\_\_\_\_,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법무부, 2002. 12.
- 법제처,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1999.
- \_\_\_\_\_, □□북한법제개요□□, 1991.
- \_\_\_\_\_, □□북한의 합영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 \_\_\_\_\_, □□중국법제개요□□, 1990.
-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1991.
- \_\_\_\_\_, □□북한총람□□, 1994
- 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하)□□, 2005.
- 서재진 외, □□북한 제·개정 법률 분석을 통해본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통일부 수탁과제), 통일연구원, 2005.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_\_\_\_\_,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손희두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2.
- 손희두 편, □□북한의 법령 및 법규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 장명봉 편, □□200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8.
- 정영화·김계환,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007.

-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구원, 2001.
- 조명철 · 정승호, 『국제표준화 활동이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에 미치는  
효과 및 남북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최의철, □□남북한 교류 · 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최종고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통일부, □□통일백서□□, 각 년도.
- 통일원, □□동서독 경제협력 사례집□□, 1995.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 한국법  
제연구원, 1994.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1.
- 황의각, □□북한경제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2.
-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제4호,  
1993 겨울.
- 김맹선 · 이시황, “남,북한 항공법 비교연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  
우주법학회지□□, 2006
- 김맹선 · 홍순길, “남북한 항공법의 구성과 체계비교”,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The 15th Anniversary of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2□□, 2007. 7
- 김병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 -중국회계  
기준의 변천을 참조하여-”,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07

참고문헌

- 김영운,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월간 통일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6.
- 김중하, “북한과 UN산하 과학기술관련 국제기구간의 교류·협력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도 연례학술회의□□, 2006. 12.
- 민경배·류길재,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2009. 5
-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과 북한”,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09
- 박선옥, “북한의 시민적 권리의 침해와 국제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
- 신현윤,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방향 - 동·서독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오동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 오인식,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성과와 전망 -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8호, 2004. 5.
-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7집 4호, 2007. 12
- 윤병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향후과제 - 중국 및 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년 10월호, 2005. 10.

- 이광만 · 강부식 · 홍일표, “남북한 공유하천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8권 제5 B호, 2008. 9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 · 제도 실천과제 연구□□, 1993.
- 이제홍, “남북 외국환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외국환거래법(남한)과 외화관리법(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 장명봉,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주평화 통일정책자문회의 정책과제, 2002.
-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정동윤, “북한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고려대 법학연구소, □□북한법률 행정론집□□ 제10집, 1995.
- 정영화, “개성경제특구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남북법제연구반 전문가초청간담회 발표논문, 2003. 11. 13.
-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뉴스레터□□ 1999년 5월호.
- 정의준, “북한의 산업 실태 분석 및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산은조사 월보□□, 2006. 2.
- 제성호,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대북투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 1993.
-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령 분석 및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참고문헌

- 조동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11
- 하태훈,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북한 개정 형사소송법, 2004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2009
- 황나미, “북한의 보건문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접근전략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2004. 5.

## 2. 북한문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2005.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1995.
-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30□□, 1995~2001.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_\_\_\_\_,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 손경원,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사회과학출판사, 200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각 연도.
- 강경희, “금융의 『국제화』와 그 파국적 후과”, □□경제연구□□ 제2호, 과학 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8.

- 강철수, “국제회계기준의 부당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 2.
- 김성호, “국제은행제도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김소영,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은행의 본신임무”,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김양호,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과 가치공간의 합리적리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3.
- \_\_\_\_\_,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 김용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김원철, “국제대부제도의 원천”, □□정치법률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김정길,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 리경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참 고 문 헌

- 리동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 리수영,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 □□정치법률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리철웅, “국제통화기금 가중투표제의 부당성”, □□정치법률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리학철, “공화국경제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제50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 박영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제의 『세계화□□』”,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6.
- 박재영,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의 중요성”,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박홍엽, “국영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과 그 표현”,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론문집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신도현,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 운영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2.
- 정영룡,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제2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3.

진유현,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이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 법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한수길, “대외무역의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

한영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협력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 제56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